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2. 18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8. 11. 19.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8. 11. 20.
- 다. 상정일자 :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위원회(2018. 12. 11.)
상정, 심사, 보류
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위원회(2018. 12. 18.)
상정, 심사, 가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가정복지과장 박한호

가. 제안이유

양성평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, 개정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양성평등 기본조례 목적 정비(안 제1조)
- 2) 성차별적 문구 정비
 - 삭제: “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” (안 제8조)
 - 삭제: “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” (안 제42조)
- 3) 양성평등기금 용도 규정 재반영(안 제41조제2항)

4) ‘성별 영향 평가법’ 개정사항 반영(조문 전반)

- 명칭 변경 : 성별영향분석평가 → 성별영향평가

5) 연관 인용법령 명칭 변경 및 용의 띄어쓰기 수정 등

3. 검토보고 (이주현 전문위원)

- 이견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3.2.7일 최초 제정·공포 되어 현재 까지 2회의 개정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. 금번 이견 조례안을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4가지입니다.
- **첫번째**, 이견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1조 목적을 정비하여 ‘양성평등 기본법’의 취지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**두번째**, 양성평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“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”는 이견 일부개정 조례안 제41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2018년말 현재 양성평등기금이 21억 3676만 7천원이 조성되어 있고 서울시 타 자치구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기금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이견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서울시 타 자치구 “양성평등기금” 사용사례 -

계	이자수입금 범위 사용	전입금 및 이자수입금	별도규정 없음	운용수입금 및 기 타 수입금	기 금 미 조 성
25개구	13개구	7개구	3개구	1개구(동작)	1개구(강남)

※ 세부현황 : 별첨1

- **세번째**, 2018.9.28일 개정된 ‘성별 영향 평가법’의 용어 등을 이견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- 네번째, 이진 조례안과 연관되어 있는 상위 법령의 변경내용 반영과 조문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검토 종합결과, 개정된 상위 법령의 용어 반영, 조례 제정의 목적 등 일부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이진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‘양성평등 기금’의 적극적 사용을 위한 “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사용한다”는 조항의 삭제는 향후 예산사정 및 타 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 아울러, 2018.10.11일부터 10.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.